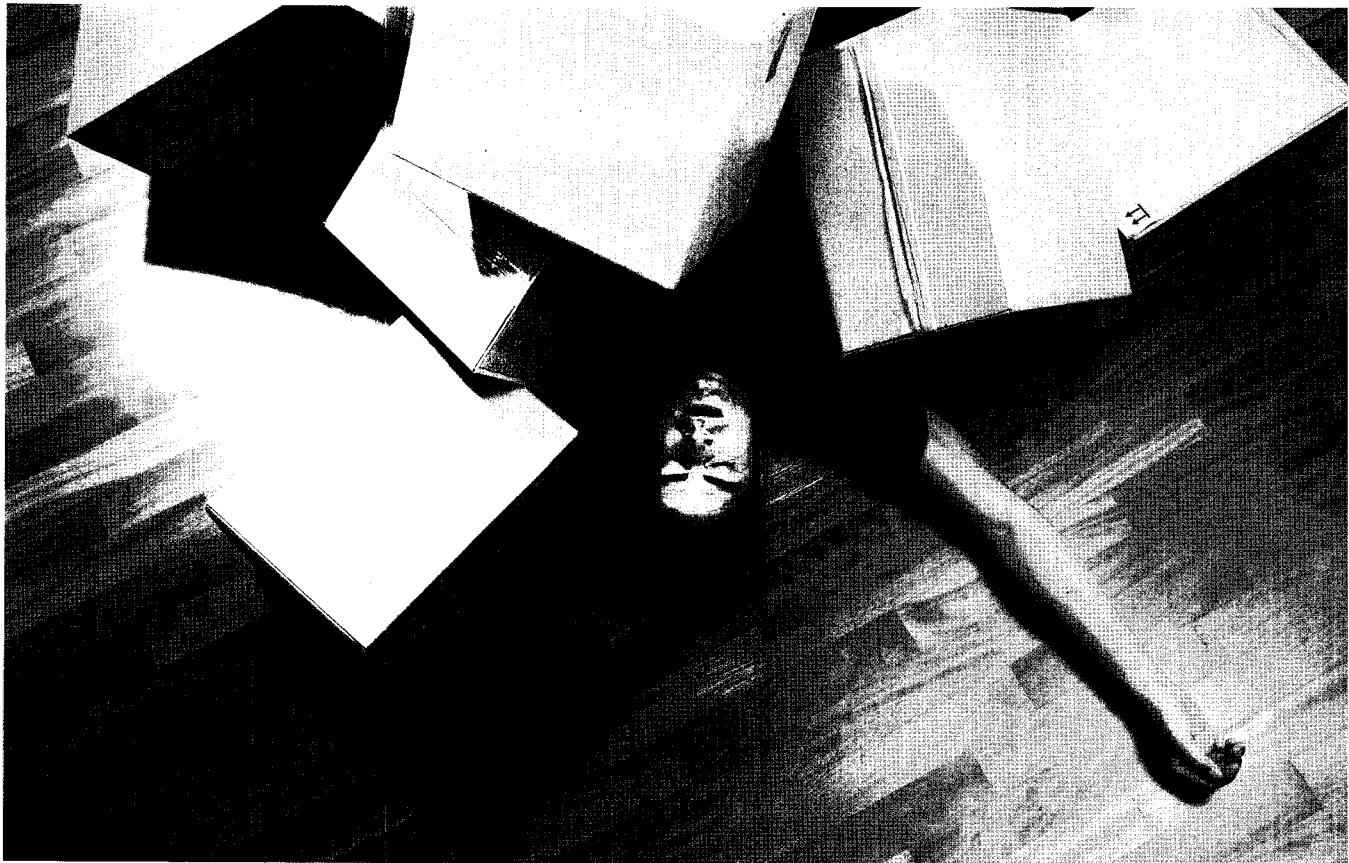


일본의 제품사고 정보 활용법

정기간행물과 부정기간행물, 강연회 등으로 사고정보 지속적 활용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우리나라에 「제품안전 기본법」이 있다면 일본에는 「소비생활용 제품안전법」이 있다. 일본에선 제품사고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소비자에 대한 홍보를 중심으로 간단히 살펴본다. <편집자>



▲ 사고정보를 소비자의 제품안전 의식을 향상시키는 무기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는 제품사고 정보를 잘 활용해야만 한다.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우리나라에 「제품안전 기본법」이 있다면 일본에는 「소비생활용 제품안전법」이 있다. 1973년에 제정하였으며 2009년에 개정된 이 법은 소비생활에 사용되는 제품의 위해를 방지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법으로, 우리나라의 「제품안전 기본법」과 제정 목적이 같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 경제산업성의 산하조직인 NITE(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and Evaluation; 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에서 제품사고를 담당하고 있다. NITE는 홈페이지와 간행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위해사고와 리콜정보를 소비자들이 알

기 쉬운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격주에 한 번 간행되는 「PS매거진」(email 구독 가능)은 각 호의 테마에 따른 구체적인 제품사고 사례와 제품의 사고정보 수집 상황 등을 실어 제품사고의 예방과 재발을 방지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소비자의 안전에 도움을 주고자 「주의환기 전단지」를 간행하여 사고가 발생한 우려가 있는 제품을 고지하고 있다. 이러한 홍보물은 홈페이지에 업로드된 후 단순 방치되는 것이 아니라 변경사항이 있을 때마다 그 내용을 반영한 변경과 추가작업 등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진다.

‘주의환기 전단지’ 등 사고정보 지속적으로 알려

한 번 발생된 제품사고도 처리 작업 후, 지속적으로 소비자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2006년도에 발생한 제품사고의 예를 보면, 사택 심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문서세탁기에 2살 반짜리 영아가 손가락을 집어넣는 바람에 손가락이 9개나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해당 세탁기의 안전설계가 미흡한 분제이기에 아동이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된 것이다. NHTB에서는 이 사고를 매우 중대한 사고로 판단하여 「사고정보 특별뉴스」를 통해 소비자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문서세탁기 등의 사무용 기기에 관한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그 이듬해 9월부터 시행하였다.

이와 같이 사고처리가 끝난 경우도 관련 정보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환기 전단지」 등을 통해 사고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알려 소비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동일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NHTB에서는 강연회 개최와 홍보를 통해 제품 안전에 대한 일반의 관심을 높이고 있다. 예를 들어 금년의 「제품안전대책 기초지식」강좌의 경우 구체적인 사고 사례의 해설을 통해 고령자의 사고 대책 방법, 정부 규제대상이 되는 위험성의 정도, 리콜의 의의, 제품안전 관련 법령과 제도(일본과 해외 제품안전정책을 포함) 등을 설명하게 된다. 이 강좌는 2011년에 들어서만 총 15회를 실시했다.

오프라인 강연회로 인터넷 정보 구분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보화시대에 이러한 강연회는 자칫 구태의연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의 떠도는 정보는 접근이 쉬운 만큼 그 중요성이나 전위를 파악하기 힘들어 비전문가에게는 정보의 선별과 구분이 힘들다. 범람하는 정보 때문에 느낄 수 있는 혼란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주는 이러한 강연회에 대한 벤치마킹을 우리도 검토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은 다양한 지원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품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동시에 국가적 차원에서 제품안전을 이루고 사고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단순한 사고처리보다는 기존 사고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소비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전의식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제품안전 사고의 발생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고정보를 장교에 보관만 할 것인지, 소비자의 제품안전의식을 향상시키는 무기로 쓸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바로 제품사고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단순한 사고처리보다는 기존 사고정보를 활용
해 소비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전의식을 향
상시켜야만 제품안전 사고를 막을 수 있다.

